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40

발의연월일: 2021. 1. 26.

발 의 자: 송옥주·김민철·송재호

맹성규 · 남인순 · 김성주

이성만 · 최종윤 · 전혜숙

안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,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·접수·결재·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·운영 근거가 없어, 신속·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,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,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제4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전자민원창구의 설치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,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"중앙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48조의2(전자민원창구의 설치 |
| | · 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제20 |
| | 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, |
| |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|
| |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 |
| | 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|
| |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|
| |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 |
| | <u>운영할 수 있다.</u> |
| |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|
| |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 |
| | 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|
| |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 |
| | 공기관(이하 "중앙행정기관등" |
| | 이라 한다)의 장과 협의하여 |
| |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|
| |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 |
| | 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. |
| |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|
| | 의 설치・운영에 필요한 사항 |
| |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|